

[별표 3] <개정 2006.1.17>

청소 및 소독과 질병매개곤충·쥐 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6 관련)

1. 청 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소 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하여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안의 공기를 배제하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할 경우 오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하여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침구·용구·도서·서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소독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

가. 물리·환경적 방법

(1) 서식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트랩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포식하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 또는 뚜껑을 덮어 먹이제공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에 쥐의 은신처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서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살서제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